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오인중 소유물 (2025타경15881 부동산임의경매)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주인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0731-15-000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2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층
TEL : (042)477-8700 FAX : (042)477-3990

(부동산)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두환

김두환 (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

정두환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일천이백사만사천오백이십원정 (₩312,044,52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주인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홍성지원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오인중 (2025타경1588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8.07	2025.08.01 ~ 2025.08.07	2025.08.11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원/m ²)	금액(원)
내용	토지	145x8 357	토지	402.8	-	68,838,800
		1 83x3				
	건물	177.24	건물	177.24	1,353,000	239,805,720
	(제시외 물건)	(1식)	물건	1식	-	3,400,000
	합계					₩312,044,52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송래성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신당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가. 토지

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2-12	도로	18.13 (지분 : 145×1/8)	계획관리	도로	세장형 완경사	17,700
2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4-25	대	357	계획관리	단독주택	사다리 평지	50,600
3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4-26	도로	27.67 (지분 : 83×1/3)	계획관리	도로	세장형 평지	17,700

나. 건물

대상 건물	소재지	건물구조 / 지붕 층 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대장상 주 용 도	사용승인 일자
4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4-25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177.24	31.61	49.65	단독주택	2015.11.1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8월 07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2025년 08월 01일~08월 07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 기호(1), (3) 토지는 공유토지 중 귀 제시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공유자 별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을 사정하였으며, 현황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대상 기호(2) 토지에 별첨 “현장사진”과 같이 제시외물건(데크시설)이 소재하여 별첨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와 같이 평가하였으나 소유관계 미상인 바 유의바랍니다.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p>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p>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가.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는 시장자료가 풍부하여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또 다른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나. 건물의 감정평가

건물은 객관적인 원가자료가 풍부하여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개별건물의 특성상 시장자료 및 수익자료의 수집, 분석, 배분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원가법은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경과연수, 현상, 잔존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 금액을 공제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가. 토지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1)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거래 시점	거래 금액 (원)	토지단가 (원/㎡)
				토지	건물			
a	서부면 남당리 384	계획관리	대	357	177.24	2024. 03.25	290,000,000 (건물포함)	186,772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사용승인일 : 2015.11.16), 이용상황 : 단독주택 · 토지추정단가 : {290,000,000원 - (1,500,000원/㎡×42/50×177.24㎡)}/357㎡ ≙ 186,772원/㎡							
b	서부면 남당리 314-4	계획관리	대	362	90.47	2023. 10.14	206,350,000 (건물포함)	174,159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조(사용승인일 : 2021.09.27), 이용상황 : 단독주택 · 토지추정단가 : {206,350,000원 - (1,650,000원/㎡×48/50×90.47㎡)}/362㎡ ≙ 174,159원/㎡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2)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㉑	서부면 남당리 278-1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199	경매	2025.05.12	2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㉞	서부면 남당리 315-1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466	경매	2024.10.02	171,000
㉟	서부면 남당리 384-24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357	경매	2024.08.05	184,000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	180,000원/㎡ ~ 200,000원/㎡ 수준	-

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대상 토지
A	서부면 남당리 590	1,021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각(가)	부정형 완경사	53,900	1~3

[공시기준일 : 2025.01.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3	A	충청남도 홍성군 (계획관리지역) (2025.01.01~2025.08.07)	0.418% (1.00418)	$(1+0.00361) \times (1+0.00045 \times 38/30)$ ≈ 1.00418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0)

4)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본건 기호 : 1, 3 / 표준지 :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체로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7	대상토지가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1.00	대체로 유사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0.33	대상토지는 도로로서 기타조건에서 열세함.
격 차 율				0.3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본건 기호 : 2 / 표준지 :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체로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7	대상토지가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1.00	대체로 유사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0.9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 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선고)]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습니다.

나)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식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text{시점수정된 표준지 단가(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아래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사례 구분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기준 시점	토지단가 (원/㎡)	적용
㉞	평가 사례	서부면 남당리 384-24	계획 관리	대	단독 주택	357	2024.08.05	184,000	표준지 A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격차율 산정

구분		사례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비고
		공시지가(원/㎡)							
산정 단가	평가사례 ㉔	184,000	-	1.00840	1.000	1.030	191,112	3.531	-
	표준지 A	53,900	-	1.00418	-	-	54,125		
산출 내역	사정보정	- 해당사항 없음.							
	시점수정	- 충청남도 홍성군 (계획관리지역)				(2024.08.05~2025.08.07)			
	지역요인	- 비교사례는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3	1.00	1.00	1.00	1.00	1.030	
표준지가 비교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위에서 산정한 격차율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비교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㉔	3.5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	A	53,900	1.00418	1.000	0.320	3.53	61,140	61,000
2	A	53,900	1.00418	1.000	0.970	3.53	185,330	185,000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61,000	18.13	1,105,930	“오인중” 지분
2	185,000	357	66,045,000	-
3	61,000	27.67	1,687,870	“오인중” 지분
합 계		402.8	68,838,800	-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사례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중 아래와 같이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대상 토지
a	서부면 남당리 384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357	2024.03.25	186,772	1~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사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3	a	충청남도 홍성군 (계획관리지역) (2024.03.25~2025.08.07)	1.152% (1.01152)	$(1+0.00097 \times 7/31) \times (1+0.00070) \times (1+0.00054) \times (1+0.00066) \times (1+0.00089) \times (1+0.00061) \times (1+0.00092) \times (1+0.00084) \times (1+0.00101) \times (1+0.00089) \times (1+0.00361) \times (1+0.00045 \times 38/30)$ ≈ 1.01152

4)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5)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본건 기호 : 1, 3 / 사례 기호 :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체로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9	대상토지가 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열세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0.33	대상토지는 도로로서 기타조건에서 열세함.
격 차 율				0.32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본건 기호 : 2 / 사례 기호 :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체로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9	대상토지가 접면도로상태 등에서 열세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0.9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사례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	a	186,772	1.00	1.01152	1.000	0.327	61,778	62,000
2	a	186,772	1.00	1.01152	1.000	0.990	187,034	187,000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62,000	18.13	1,124,060	“오인중” 지분
2	187,000	357	66,759,000	-
3	62,000	27.67	1,715,540	“오인중” 지분
합 계		402.8	69,598,6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1	1,105,930	1,124,060	1,105,930
2	66,045,000	66,759,000	66,045,000
3	1,687,870	1,715,540	1,687,870
합 계	68,838,800	69,598,600	68,838,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 감정평가액

가. 대상건물 동별·층별 개요

대상 건물	구 분	구 조 / 지 붕	용 도	면적(㎡)	사용승인일자
4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06.53	2015.11.16
	2층			70.71	

나. 재조달원가의 결정

1) 표준단가 결정

가)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기준
01-01-05-06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박공지붕/ 아스팔트싱글	4	1,528,000	50 (45~55)	2024.01
01-01-05-09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749,000	50 (45~55)	2024.01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나) 표준단가 결정

건물의 표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기준으로 대상건물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및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건물	구 분	이용상황	구조	표준단가 (원/㎡)	비고
4	1, 2층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65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부대설비 보정단가

대상 건물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설비	기타설비
4	○	-	○	-	-	-	-
	보정단가 (원/㎡)	표준단가에 포함하였음.					

3) 재조달원가의 결정

대상 건물	구 분	표준단가 (원/㎡)	부대설비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비 고
4	1, 2층	1,650,000	-	1,650,000	-

다.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대상물건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가수정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상 건물	구 분	재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	경제적 내용 연수	물리적 경과 연수	잔존내용연수		적용단가 (원/㎡)
						관찰감가 적용시	적용잔존 내용연수	
4	1, 2층	1,650,000	2015.11.16	50	9	-	41	1,35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대상 건물	구 분	면적(㎡)	건물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4	1, 2층	177.24	1,353,000	239,805,720	-
합 계		177.24	-	239,805,720	-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목적 및 환가성, 장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토지·건물 일괄한 비교방식이나 수익방식 적용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 지	68,838,800	상세내역은 후첨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건 물	239,805,720	
제시외물건	3,400,000	
총 액	312,044,52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08-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2-12	도로	계획관리지역	145x- 8	18.13	61,000	1,105,930	"오인중" 지분
2	동 소	384-25	대	계획관리지역	357	357	185,000	66,045,000	
3	동 소	384-26	도로	계획관리지역	1 83x- 3	27.67	61,000	1,687,870	"오인중" 지분
4	동 소 [도로명]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향로 264번길 53-2	384-25 주1동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1층 2층	106.53 70.71	177.24	1,353,000	239,805,720	1,650,000 x 41/50
소 계								₩308,644,520	
①	(제시외)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물건) 384-25	데크시설	목조	(1식)	1식	-	3,400,000	
소 계								₩3,400,000	
합 계								₩312,044,520.-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 참고사항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신당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순수 농촌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목장, 펜션, 농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주거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세장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3) : 대상토지가 세로인 포장도로임.
기호(2) : 인근 포장된 세로로부터 도로인 기호(1), (3) 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 참고사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황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5. 공부와의 차이
6. 제시외 물건

7. 임대관계 및 기타사항

1. 건물의 구조

- 기호(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판넬씩움) 2층 건물로서,
- 외벽 : 석재치장 등
 - 내벽 : 벽지도배, 목재루버,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새시유리창임.

2. 이용상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해당사항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제시외 물건

별첨 “현장사진”과 같이 제시외물건 기호①(목조 데크시설)이 소재하여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와 같이 평가하였으나 소유관계 미상임.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황
3. 위생설비 및 기타설비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5. 공부와의 차이
6. 제시의 물건

7. 임대관계 및 기타사항

7. 임대관계 및 기타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역 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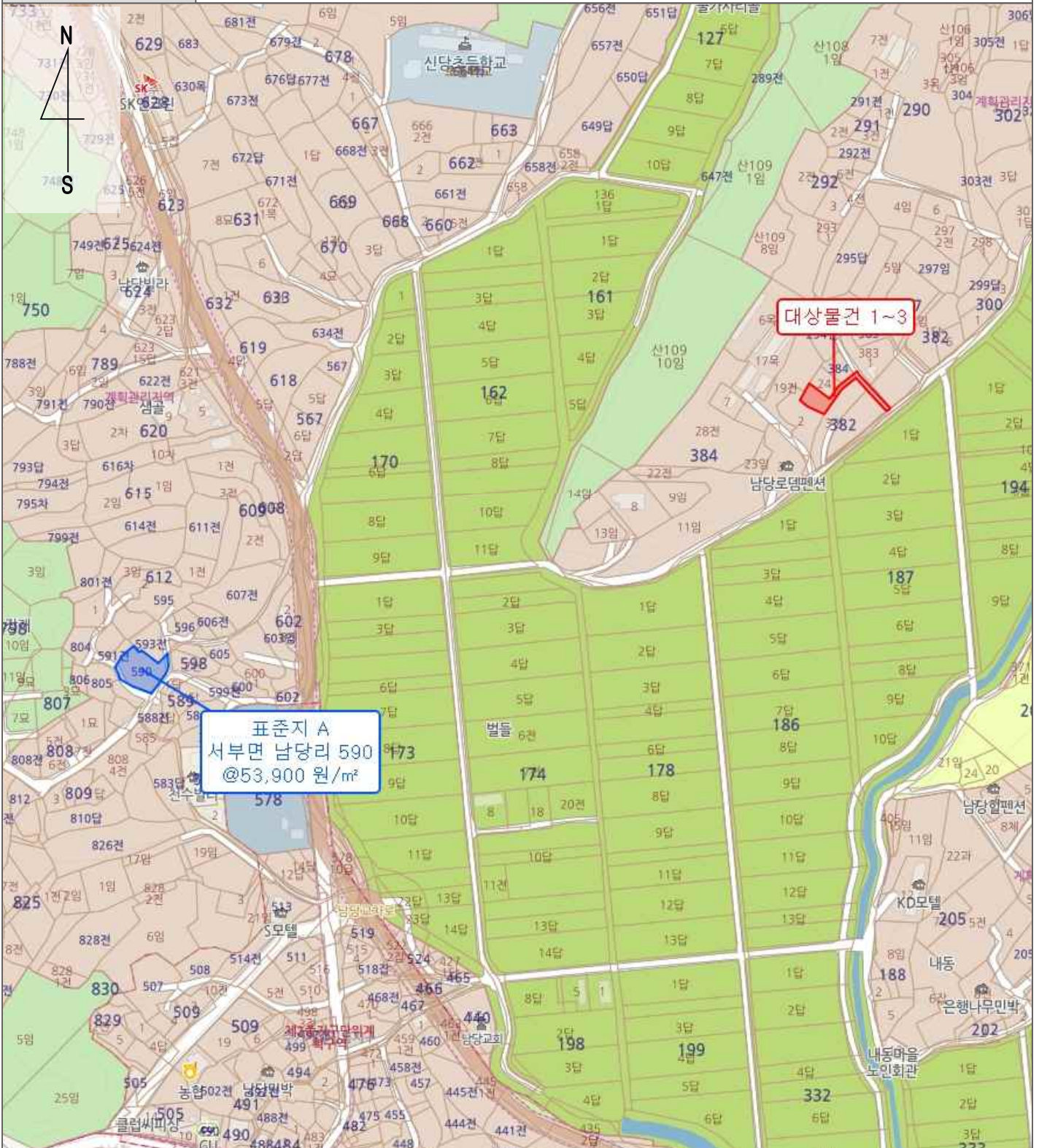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2-12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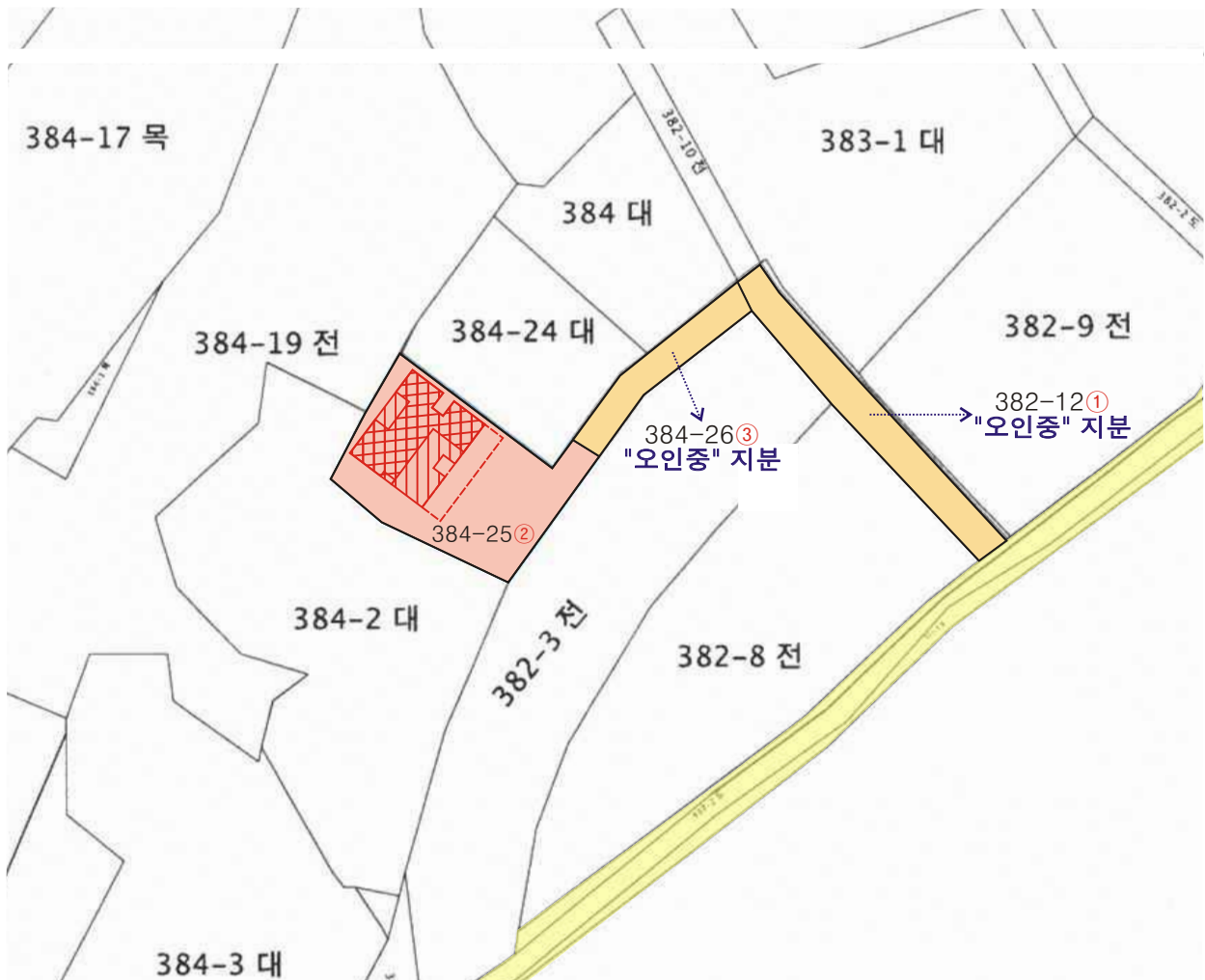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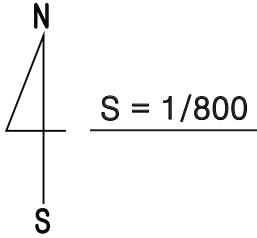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82-12 외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 이상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현 장 사 진



【 본건 및 주위환경 】



【 본건 및 주위환경 】

현 장 사 진



【 기호(2) 토지 및 기호(4) 건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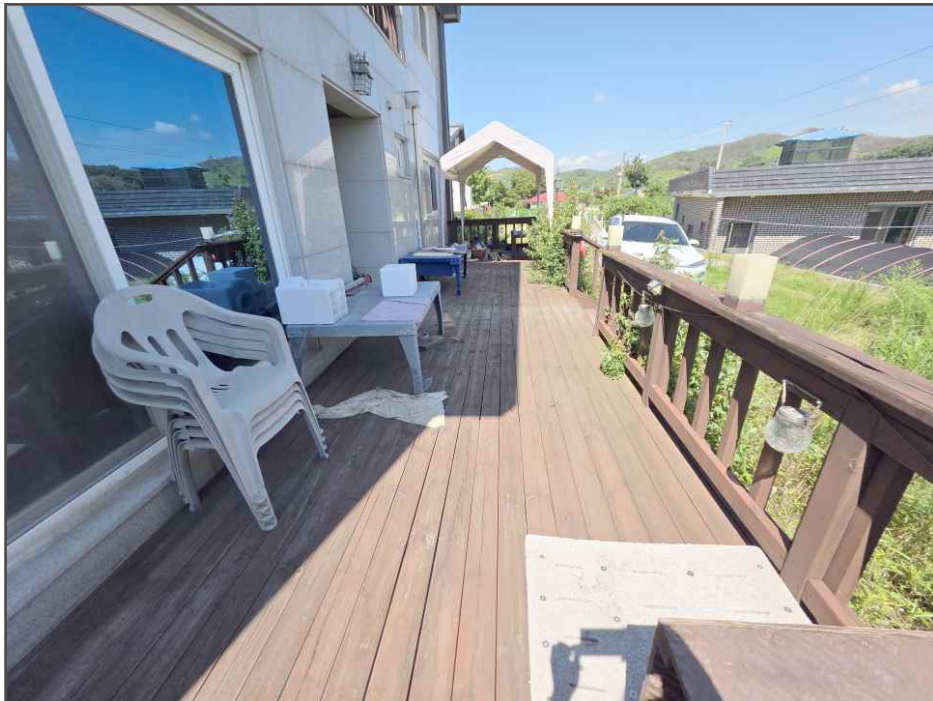


【 기호(4) 건물 】

현 장 사 진



【 기호(4) 건물 】



【 제시외물건(① 데크시설) 】